



# 학생회 선거 규약

규정번호	3-4-10
제정일자	1985.06.29
개정일자	2016.01.01
개정번호	Ver.6 총페이지 4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선거권)**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재학생으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.(단, 졸업 예정자는 제외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 학생회장 선거가 다음 학기로 연기될 경우 전교생이 투표권을 가진다)

**제2조(피선거권)** ① 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통솔력이 있는 자
2.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전 학기 평균 성적이 B0학점 이상인 자
3. 학칙을 위반하여 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
4. 2년제 학과는 1학년, 3년제 학과는 1, 2학년에 재학 중인 자

② 총학생회 선거가 다음 학기로 연기될 경우 회장 및 부회장 후보출마자는 재학생으로 하되 1학년은 제외 하며 기타 자격조건은 1항에 따른다.

**제3조(선거방법)** ① 총학생회회장, 총학생회부회장 및 학과대표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한다.

**제4조(선거시기)** 선거 시기는 매 학년도 2학기 말에 실시한다(단,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11월중에 실시가 불가능할 때는 그 사유가 해제되는 최단 시일 내에 실시하며, 익년까지 그 사유가 유지될 경우 선거 시기는 3월로 한다)

**제5조(선거비용)** 선거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회비에서 지출한다.

##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

**제6조(기능)**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회장, 총학생회부회장 및 학과대표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
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
**제7조(구성)** ①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은 총학생회회장이 추천하는 10인 (총학생회회장 별도)과 대의원회의장이 추천하는 10인(대의원회의장별도)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학생회회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대의원회의장이 된다.

- ② 총학생회회장 탄핵 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의원회의장이 추천하는 각 학과 2인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의원회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대의원회부의장이 된다.
- ③ 총학생회회장 유고시에는 대의원회의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대의원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이 부위원장이 된다.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10인(위원장 별도)과 부위원장이 추천하는 10인(부위원장 별도)으로 구성한다.

**제8조(구성 및 해체)**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개시 15일 전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당선 공고 후 3일 이내에 해체한다.

**제9조(임무 및 권한)** ① 선거일 7일 이전 선거일 공고

- ② 선거인 명부 작성
- ③ 선거 홍보용 유인물 및 벽보작성
- ④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
- ⑤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일체
- ⑥ 선거장의 질서 유지 및 감독
- ⑦ 재선거 여부 결정
- ⑧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일체

**제10조(금지사항)**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입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자격 박탈과 징계의 대상이 된다.

### 제 3 장 입후보자 및 투표, 개표, 당선공고

**제11조(등록절차)**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7일 이전에 선거관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등록원서
2. 성적증명서
3. 재학증명서
4. 선거권자 70인 이상의 추천서 단, 추천하는 자는 1인 이상을 추천할 수 없다
5. 학부(과)장 및 지도교수 추천서

**제12조(당선결정)** 총학생회회장 및 총학생회부회장은 공동 입후보하며, 학과대표는 개별 입후보하여 선거권자의 과반 수 이상의 직접선거로써 각각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단, 단독 출마 시 과반 수 이상 투표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서 당선으로 한다.

**제13조(투표 및 개표)** 투표, 개표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관리 하에 실시한다.

**제14조(투.개표 참관)** 각 입후보자는 투.개표장에 참관인 2인을 입회시킬 수 있다. 단, 투.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동은 할 수 없다.

**제15조(투표함 및 용지)** 투표함 및 투표용지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제작한 것이라야 한다.

**제16조(투표방법)** ① 선거인은 투표 시 학생증을 제시한 뒤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한다. 단, 주민등록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.

② 투표 마감시간이 경과 시에는 투표할 수 없다

**제17조(무효표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로 한다.

1.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제작한 투표지가 아닌 것
2. 기입 표시가 불분명한 것

**제18조(당선결정)** 당선은 유효 투표수중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단, 동수일 때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한다.

**제19조(이의신청)** ① 선거기간 중에 이의가 있을 때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단, 당선 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재적의원 2/3이상의 동의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.

## 제 4 장 선거운동

**제20조(선거운동)** 입후보자는 등록을 필한 직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

**제21조(운동방법)** ①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지정한 날과 장소에서 후보자 전원이 합동유세를 갖는다.

② 선거운동은 벽보, 현수막, 소견발표, 기타 유인물을 통하여 할 수 있다.

**제22조(금지사항)** 선거의 순수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, 금품수수, 폭행, 협박, 납치 행위 등을 금한다.

**제23조(후보자격 상실)** 제22조를 위반할 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
## 제 5 장 보궐선거

제24조(보궐선거) ① 총학생회회장 유고 시 잔여 임기가 180일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

② 보궐선거는 총학생회회장의 유고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.

### 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약은 198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약은 198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약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약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약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약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약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